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39

발의연월일: 2025. 5. 16.

발 의 자:조지연·김장겸·김정재

이인선 · 강승규 · 박충권

우재준 • 최수진 • 김도읍

엄태영 · 이양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할 실정임.

특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신설 등).

법률 제 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원사업에 관하여"를 "지원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		
업) ①・② (생 략)	업)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u>지원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	<u>4</u>		
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u>지원사업 및 제3항</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		
정한다.	원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u>등에</u>		